

人口動態標本調查 指針書

1987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연혁	5
2. 조사목적	5
3.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5
4. 조사대상 기간	6
5. 조사지역	6
6. 조사시기	6
7. 조사방법	6
II.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7
1. 기본자료의 작성	9
가. 기본자료의 종류	9
나. 작성시기	9
다. 작성시 유의사항	9
라. 가구표 작성요령	11
마.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24
2. 기본자료의 수정 및 보완	31
가. 조사구요도	31
나. 가 구 표	34
다. 가구명부	39
라. 변동사항 종합표	40
III.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41
1. 조사표의 종류	43
2. 작성시기	43
3. 일반적인 주의사항	43
4. 면접 및 조사표 작성요령	44
가. 출생조사표	44
나. 사망조사표	48
다. 혼인조사표	54
라. 이혼조사표	56

IV.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59
1. 조사표류의 검토	61
가. 가 구 표	61
나. 변동보고서	61
다. 조 사 표	62
2. 조사표류 제출	63
가. 제출상의 유의점	63
나. 제출할 조사표류	63
다. 제출일자	63
〈부록〉 각종 조사표류 및 인구동태직업부호	65

I. 조 사 개 요

I. 조 사 개 요

1. 조사연혁

인구동태표본조사는 호적신고에 의한 인구동태통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 조사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1969년 이후 중단되었다.

그후 1972년부터 일반통계 111-21-03호로 승인함과 동시에 조사의 방법 및 표본을 대폭 개편하여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78년 및 1979년에는 인구동태표본조사구에서 중복조사를 실시, 제반 인구동태율을 생산하였으며 중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1월부터 조사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조사목적

인구동태표본조사는 조사구내에서 발생하는 출생, 사망 및 인구 이동에 관한 인구동태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단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한 정태인구를 추정하며
- 국민의 생명표작성, 사망원인분석, 간접출산력 측정 및 가족계획실적의 평가자료 등 보건위생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 기타 경제, 사회, 후생, 교육 등 광범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 조사대상기간중 조사지역내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 및 인구(전입 및 전출인구 포함)
- 조사대상기간중 조사지역내에서 발생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4.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기간은 전월 16일부터 금월 15일까지로 한다.

5. 조사지역

- 1980년 인구센서스의 약 103,000조사구(시부-63,000, 군부-40,000) 중에서 540개 조사구(시부-447, 군부-93)를 추출하였다.
- 그리고 이를 조사구별로 1980년 인구센서스 가구수로 평균 약 10가구가 되도록 여러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부에서는 2개의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하였으며 군부에서는 6개의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하여 조사구역으로 선정하였다.
- 따라서 조사구별로 지정된 구역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여야 한다.(전국 약 17,000가구)
- 모집단의 변화를 표본에 반영시키고자 년 2회 신축아파트를 파악, 표본설계 당시의 추출률(1/547)을 적용하여 표본조사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보완하고 있다.
- 1984년 8월 조사부터는 매월 1/12씩 표본조사구를 교체하므로 전국적으로 약 48개 조사구를 신규로 조사해야 한다.

6. 조사시기

매월 15일이 포함된 다음 1주일동안에 조사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같은시기에 조사하므로 별도지시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7. 조사방법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하는 면접식 타계조사방법에 의한다.

Ⅱ.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Ⅱ. 기본자료의 작성 및 수정보완

1. 기본자료의 작성

가. 기본자료의 종류

- 인구동태표본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자료에는 첫째, 가구표와 가구명부가 있으며 둘째, 변동보고서와 변동사항종합표가 있다.
- 가구표 및 변동보고서는 표본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
이므로 각 항목의 내용이 정확히 기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성시기

1) 가구표 및 가구명부

- 표본이 교체되어 인구동태사항을 처음으로 조사하게 되었을 때는 신규 조사구역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전입가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매월 이를 파악하여 해당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한다.

2) 변동보고서

- 매월 조사지역을 방문, 기존 가구표상의 내용중 착오, 누락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 변동보고서에는 조사구의 경계 및 거처변동등 조사구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변동보고서 및 변동된 가구의 가구표는 전월 16일부터 금월 15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금월 21~25일 사이에 작성한다.

- 표본연동교체로 인하여 새로 시작하는 구역의 가구표 작성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작성시 유의사항

- 모든 조사사항은 가구원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실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가구의 책임있는 응답자 즉 가구주나 각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동거인에게 대한 조사는 반드시 본인을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책임있는 응답자를 면담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표를 가구주에게 맡겨 기입토록 하고 다음날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도시에서 면접을 거부할 경우 대문밖에서 대강의 문답으로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면접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은 몇번이라도 재방문하여 조사원의 신분과 조사의 목적 및 조사결과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수차의 노력에도 안정된 상태에서 면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반장 혹은 이장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대동 방문하거나 지도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이러한 사항은 조사내용의 정확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구표의 「②비고」란에 기입하여 둔다)



- 가구표 및 변동보고서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기본자료로서 모든 항목은 표본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므로 모든 항목의 기입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 생년월일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하고 임신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에게만 묻는다.

라. 가구표작성요령

①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각 지역별로 이미 부여되어 있는 담당조사구번호를 기입하며 지역별로는 아래와 같다.

- 서울시 001-234
- 부산시 250-339
- 대구시 351-402
- 인천시 403-435
- 기타시 502-569 (경기, 강원)
603-637 (충북, 충남)
701-755 (전북, 전남)
803-869, 951 (경북, 경남)
903-907 (제주)
- 군 부 571-595 (경기, 강원)
671-692 (충북, 충남)
771-796 (전북, 전남)
871-899 (경북, 경남)
981-993 (경남, 제주)

○ 기존의 조사구번호앞에 0을 추가하여 4자리로 기입하여야 하나 분할된 조사구는 별도로 첫자리의 숫자가 부여된다.

② 구역번호

구역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구역은 조사구를 다시 10가구씩 묶어서 분할한 하나의 지역을 말하며 시 부에서는 2구역을, 군부에서는 6구역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983년 10월분 조사부터 표본연동교체를 실시하여 구역번호의 칼럼수를 1개에서 2개로 변동하였다.

③ 거처번호

거처번호		
------	--	--

거처번호는 구역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에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그러나 조사구내의 새로 발견되는 신규거처는 구역에 관계없이 지정순위에 따라 부여한다.

④ 가구번호

가구번호				
------	--	--	--	--

- 가구표의 가구번호는 그 거처내에 몇 가구나 생활하도록 구획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구가 몇번째 변동된 가구인가에 따라 기입한다.
- 기입요령은 처음 두 칼럼에는 그 거처내에 살고있는 가구수를 2단위로 기입하며 나머지 2칼럼은 처음 가구번호를 부여한 뒤 그 가구가 몇번 변동되었는가를 2단위로 기입한다.
 - ※ 예) ○ 3번거처에 3가구가 살 때 그 첫번째 가구는 처음과 똑같음(변동되지 않았음) → 0101
 - 3번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두번째 가구는 3번 이사하고 4번째 이사들어 온 가구임 → 0204
- 그리고 전입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 끝의 두 칼럼만 변동되도록 가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간에 전출가구가 있더라도 이 전출가구의 가구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외인 경우

- 첫째 ; 같은 거처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세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가구가 전출했을 때

그 옆방에 살던 가구가 그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동하지 않는다.(이동이유는 방이 따뜻해서, 부엌이 조금 더 넓으니까 등)

- 들쭉 ; 같은 거처내에서 다른 가구가 사용했던 곳까지 합해서 사용할 때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세가구가 살다가 한가구가 전출했을 때 그 전출가구가 살던 곳을 옆방에 살던 가구가 사용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가구의 정의

가구라 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보통가구**

원칙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이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

- **단독가구**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즉, 한 사람이 집을 모두 사용하거나 방을 빌려서 자취를 하는 경우

- **비혈연가구**

혈연관계를 갖지 않은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가구 즉, 다방,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 등에서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종업원들이 함께 그곳에서 먹고 잘 경우

그리고 다음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남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은 단독가구가 될 수 없고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하숙을 하는 경우는 별개의 보통 가구가 된다.
- 고용주와 같이 살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가정부, 점원, 기타 고용인 등은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기숙사, 양로원, 요양원, 교아원 등은 조사편의상 가구의 형태개념에서 제외한다. 조사구안에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양로원, 교아원, 요양원 등)이 새로 생길 경우 이와 같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 가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별도의 한 가구로 한다.
- 외국인은 조사하지 않는다.

《알아봅시다》

○○기숙사, ○○양로원과 같이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의 명칭이 있을 때는 수용인원수에 관계없이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로 간주하며, 시설의 고유명칭이 없다하더라도 조사당시 그 시설내의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시설이나 특수사회시설로 간주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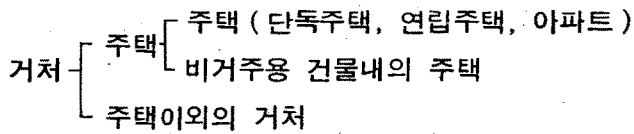
(따라서 20인 미만이 기거하고 있는 집단 시설은 비혈연가구로 간주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안의 보통가구(양로원, 요양원, 고아원 등의 관리인 가구, 기숙사 사감의 가구 등)는 조사한다.

⑤ 주 소

그 가구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번지·호수는 물론 통·반까지 자세히 기입한다.

⑥ 거처구분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따라서 거처를 구분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먼저 응답자가 살고 있는 장소가 주택에 속하는지 주택이외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에 만일 그 거처가 주택에 속한다면 그 주택의 종류를 가려야 할 것이다.

주택의 판별과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정의

- 보통 독채로 된 살림집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완전히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을 말한다.
- 주택의 구비요건은
 - 첫째 ; 영구건물
 - 둘째 ; 한개 이상의 방 및 부엌
 - 셋째 ; 독립된 출입구
 - 네째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일단위

주택의 종류

독채 살림집,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원칙적으로 한 가구만 살도록 건축 또는 개축된 건물을 말한다.
- **연립주택**
두가구 이상이 살도록 연립하여 건축된 3층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
- **아파트**
한 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분획되어 있는 4층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여관, 식당, 상점, 사무실, 공장 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를 말한다.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처

예 : • 호텔, 여관 등의 숙박업소

-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 사찰(암자 제외)
- 토목공사 현장

- 기타 천막, 토굴 등

㉗ 소유관계

1. 자 가

가구주 소유의 집

2. 전 세

집주인에게 정해진 돈을 이자없이 맡기고 들었다가 나갈 때 다시 찾게되는 셋집 (셋방)

3. 보증부월세

보증금을 내고 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 (셋방)

4. 삭월세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셋집 (셋방)

5. 월 세

보증금없이 정해진 월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 (셋방)

6. 기 타

무상 (세없이 빌려든 집이나 방), 관리비만 내는 관사 또는 사택 등이 포함되며 그 내용에 따라 우측여백에 무상, 관사, 사택이라 기입한다.

㉘ 구역구분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내의 가구에 대하여 「1」에 ○표시 하고, 기타 구역에는 「2」에 ○표시한다.

㉙ 가구구분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내의 가구에 대하여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기타 구역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㉔ 번 호

- 가구원번호로 가구원수가 8인 이상일 때에는 가구표를 2매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장의 번호는 08,09,10…… 등으로 수정하고 ⑤란부터 ⑨란, ㉔란은 부호만 기입하지 않는다. 이때 란외의(매중 매)란을 기입하여야 한다. 가구원수가 7인 이하일 경우에는 (매중 매)란을 기입하지 않는다.
- 특히 가구원이 전출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구원번호를 다시 수정해서는 안되며 일단 사용했던 가구원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도 안된다. 전출한 가구원이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종전의 가구원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맨 마지막 번호를 준다.

㉕ 이 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기입하되 가급적이면 가구주, 배우자, 미혼자녀, 미혼형제 및 자매, 기혼자녀, 기혼 형제 및 자매와 그 가족, 부모, 친척, 동거인 순서로 기입한다.

가구주의 정의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 중에서 사실상 의 생계책임자로서 소득이 많은 자를 말한다.

가구원의 정의

가구원이란 가구주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혈연관계가 있든 없든)으로 상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하는 사람의 정의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 당시 조사구역에 생활의 본거 의사를 갖고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된다.

-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상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 조사구내에 살고 있으면서 조사당시 일시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즉, 친족 방문, 출장, 사업상 여행중인 사람



○ 가족은 다른 구(조사구 밖)에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날자를 그 조사구내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 즉, 방학동안에만 자기 집에 가 있고 학교는 그 조사구내에서 다니면서 가끔 자기집에 들리러 가곤하는 사람, 가정부 등



○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서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발견된 사람 즉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동자, 걸인 등과 그들의 가족

○ 영외에 거주하는 현역군인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장기간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중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은 상주개념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간주한다.

* 외국인,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교도소 수감자는 가구원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부모님도 뵈올겸하여 당분간 와있는 사람중(본인들은 곧 간다고 할 경우) 다음 달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이 문을 닫아 당분간 와있는 사람중 그 다음 달에도 그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아들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이번에는 이 조사구내의 아들차례여서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학교에 다니거나 농사를 짓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사람중(부모들은 끝을 거라고 얘기함) 다음 달에도 오지 않았으면 전출로 처리한다.



⑫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가구주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알기 쉬운 말로 간단히 기입한다. 즉 가구주, 처, 차남, 차녀, 장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남, 부, 모, 고모의 장녀, 가정부(식모), 하숙인, 점원, 고용인 등

⑬ 성 별

-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로 기입한다.
-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성별 묻는 것을 꺼려하므로 질문하는데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⑭ 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실제로 출생한 생

년월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순서를 밟는다.

1. 생일이 언제입니까?
2.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3. 몇 살입니까? 띠는 무엇입니까?

로 질문한 후 음력의 경우는 양음력 환산표를 보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하고 나이와 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띠」를 중심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⑮ 학 력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재학, 중퇴, 졸업을 나타내도록 기입한다.
· 예 : 「국 2 년재」, 「국졸」, 「중 2 년재」, 「고 3 년졸」, 「대 4 년재」, 「대졸」 등
- 연령미달로 미취학의 경우에는 「미취」, 기타 연령에 지났으나 학교를 안다닌 경우에는 「무학」으로 기입한다.
- 특히 유의할 사항은 중퇴의 경우나 재학의 경우 몇년 중퇴 및 재학인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예 : 「중 2 년중퇴」, 「중 3 년재」 등

⑯ 배우관계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기입하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 사실혼의 경우도 유배우로 한다.
- 한 사람이 한명 이상의 처를 거느리고 있을 때에도 모두 유배우로 한다.
- 사별이란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의 한편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록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별로 취급한다.

사실혼

사실혼이란 가정을 구성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동거 등으로 객관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별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혼으로 간주한다.
- 미혼은 한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두번 이상 결혼한 경우 최종상태를 배우관계로 한다.
즉 초혼에 실패(이혼, 사별)하고 재혼하였으나 사별(이혼)하여 현재 홀로 있으면 사별(이혼)에 해당된다.

⑰ 초혼년월

- 모든 기혼남자 및 여자에 대하여 첫 결혼년도 및 월을 조사기입한다.
- 초혼년도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초혼 당시의 연령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계산하고 음력월은 양력으로 환산하도록 한다.
- 사실혼의 경우 동거시작 년월을 기입한다.

[예 1] 출생년월일 : 1941년 6월 18일
 초혼 연령 : 23세 음 11월 30일 (세는 나이)

$$\begin{array}{r}
 1941 \\
 + 22 \\
 \hline
 1963
 \end{array}
 \quad
 \text{초혼년월 : 1964년 1월 14일}$$

이 경우 양·음력환산표 1963년을 보고 음력 11월 30일을 찾으면 다음 해로 넘어감을 알 수 있다.

[예 2] 출생년월일 : 1924년 11월 23일
 초혼 연령 : 19세 음 3월 15일 (세는 나이)

$$\begin{array}{r}
 1924 \\
 + 18 \\
 \hline
 1942. 4. 29
 \end{array}
 \quad
 \text{- 초혼년월일}$$

양·음력환산표 1942년에서 음력 3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42년 4월 29일이 된다.

[예 3]

출생년월일	1942년 1월 19일
초혼 연령	29세 양력 12월 25일 (새는 나이)

- 가) 1942 • 출생년월일이 양력이나 음력 모두 1942년에 해당될 경우
 + 28
 1970.12.25
- 나) 1942 • 출생년월일이 음력으로 1941년에 해당되고 양력으로는 1942년일 경우
 + 27
 1969.12.25

※ 초혼년월 계산은 초혼일자가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없고 다만 초혼일자가 생일이 음력일 경우 양력으로 환산해서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만 2를 빼준다. (환산해도 똑같은 연도일 때는 1만 빼준다)

⑮ 이상자녀

- 이 란은 출산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가임유배우여성에게만 묻는다. 「귀댁에서는 총 몇 명의 자녀를 갖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묻고 남녀수를 기입한다.
- 애매한 응답을 하는 경우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재차 물어 응답을 얻어낸다.

⑯ 임신여부

- 기혼부인중 임신가능연령 (15 ~ 49세)에 해당하는 부인에게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부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출산예정년월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 그 임신이 끝났을 경우에도 변동보고서 [7] 임신결과란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㉔ 총 출생아

- 15세 이상 기혼부인에게만 묻는다.
- 총 출생아수는 출산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망자녀를 포함한 총 출생아수를 기입한다.
- 단, 총 출생아수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대로 적고 부호는 9로 기입한다.

㉕ 전입일자

- 가구 또는 가구원이 실제로 전입한 일자를 기입한다.
- 주의할 사항은 전입누락을 2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전입한 일자이다.

㉖ 비 고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특기할 사항 및 기록 수정이 필요할 경우 등을 함께 기입하며 주로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㉗ 가계조사 부적격 사유

가계조사구역내의 부적격가구에만 부적격 사유를 기입한다.

㉘ 비 고

조사에 참고가 될 사항은 무엇이나 기입한다. 특히 가구의 특징과 동태조사에 대한 응답태도는 반드시 기입한다.

가구의 특징으로는

- 구멍가게의 경영 생활
- 극빈가구 : 가구주 반신불수

- 상류 생활가구 주택건평 50평
- 4번 가구원(○○○)임신불능
- 대포집
- ○○○공장 안집으로 4명의 기능공이 동거
- 조사에 매우 협조적임
-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응답에 성실성이 없음 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하도록 한다.

마.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1) 난외사항 (①란부터 ④란)

① 조사구번호

지역별로 이미 부여되어 있는 담당조사구 번호를 4단위로 기입한다.

② 가구표정리

- 조사담당
조사원이 제 조사표류(가구표, 조사표, 변동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입내용을 확인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이름을 기입한다.
- 지도구책임자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고 지도구책임자(관리계장)가 확인 날인한다.
- 담 당
사무소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③ 현 황

- 전월가구
전월변동보고서 제출당시 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변동보고서 ③란의 금월가구수가 전월의 가구수가 된다.
- 증가가구(상단)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⑤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증가가구 (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인한 신규조사구역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감소가구 (상단)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⑭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감소가구 (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인한 조사중지구역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금월가구 = 전월가구 + 증가 - 감소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 전월인구
전월변동보고서 제출당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변동보고서 ③란의 금월 인구수가 전월의 인구수가 된다.
- 증가인구 (상단) = ⑥ + ⑳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인구수를 기입한다.
- 증가인구 (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인한 신규조사구역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 감소인구 (상단) = ⑮ + ㉑
전월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인구수를 기입한다.
- 감소인구 (하단)
표본 연동교체로 인한 조사중지구역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 금월인구 = 전월인구 + 증가 - 감소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금월인구수는 변동사항종합표상의 인구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출생·사망수

③란 현황과는 별도로 출생과 사망진수(누락진 포함)를 기입한다.(하단에는 신규로 조사하는 구역의 출생, 사망진수를 기입하며 중단된 구역의 소

급조사분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출생과 사망의 누락분에 대해서는 특기 사항란에 「○○월 출생누락 ○전」 등과 같이 기입하여 준다.

2) 란내사항 (⑤란부터 ⑳란)

① 가구증가 (⑤란부터 ⑬란)

-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⑦란부터 ⑨란까지 가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⑤란은 증가된 총가구수 ⑥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가구원수 (⑨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 가구전입의 경우 ⑪란에는 ○○도○○시·군을 기입하며 ⑫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
- ⑬구분란에는 전입·전입누락, 착오를 변동이유로 기입한다. 단, 가구전입의 경우 각 가구원의 이전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특기사항란에 일일이 기입한다.
- 조사구내에서 한 가구가 2가구로 되었을 때에는 분가된 가구수를 하단 「분가 가구수」에 기입하고 ⑤란 총 증가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 착오가구는 ⑪란, ⑫란을 사선「\」한다.

② 가구감소 (⑭란부터 ㉒란)

-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⑮⑰⑱란에 가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⑭란은 감소된 총 가구수 ⑮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 가구원수 (⑱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 구분란에는 전출, 전출누락, 사망(1인가구일 경우), 착오를 변동이유로 기입한다.
- 가구전출의 경우 ㉒란에는 ○○도○○시·군을 기입한다. ㉑란 이동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 가구전체가 전출하였으나 그 목적지가 가구원별로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란에 각각 기입한다.
예 : 「○번가구원은 ○○도 ○○시·군으로」 「○번 가구원은 ○○도 ○○시·군으로」

- 조사구내의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하단에 「통합된 가구 수」를 기입하고 ⑭란에 감소된 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 착오가구 및 사망가구는 ⑳란, ㉑란을 사선한다.

③ 가구원 증가 (㉒란부터 ㉓란)

- 가구원의 전입, 전입누락, 착오, 출생 등은 가구원의 증가요인이 된다. 이때에는 가구표의 정리를 위해 ㉒란부터 ㉓란까지 가구표 작성요령으로 기입한다.
- ㉒전거주지란부터 ㉓구분란까지는 「□ 가구증가」란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 ㉒란은 하단에 기입된 가구원수를 모두 합해서 기입한다.
- 출생 및 착오가구원은 ㉒란, ㉓란, ㉔란을 사선한다.

④ 가구원 감소 (㉕란부터 ㉖란)

- 가구원의 전출, 전출누락, 착오, 사망 등은 가구원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이때에는 「④ 가구원 감소」의 각란에 가구 감소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 사망 및 착오가구원은 ㉕란, ㉖란을 사선한다.

⑤ 가구표 수정요구사항 (㉗란부터 ㉘란)

- 가구표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㉗ 및 ㉘란에 기입하고 ㉙란은 수정하여야 할 항목번호를 기입하고, ㉚수정내용에는 수정할 내용을 기입한다.
단, 부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전과 변동후의 내용만 기재하고 부호는 기입하지 않는다(예시 참조)

기입 예 :

예	㉘가구번호	㉙가구원번호	㉚가구표란번호	㉛수정내용	
				수정전내용	수정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5-01-02 가구 2번가구원 암희순의 생년월일 1937.2.15 →1997.2.15 	01-05-01-02	02	14	1937.2.15	1927.2.15
* 각 란의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06-02-01 번가구 6번가구원 김철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4남→점원으로 	12-06-02-01	06	12	4 남	점 원
* 각 란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6-03-02 번가구 3번가구원 김영석의 학력란이 중졸→고1 재로 	11-06-03-02	03	15	중 졸	고 1 재
* 각 란은 부호기입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20-02-01 번가구 가구주의 이름이 김병석→김영식으로 	02-20-02-01	01	11	김병석	김영석
* 각 란은 부호기입을 해서는 안됨.					

- 가구표를수정할 때 가구표의 ①란 주소~④란 가구번호 및 ⑩란 가구원번호는 본 란에 수정 요구할 수 없다.
- 다만, ②란~④란을 수정코자 할 경우는 「㉞ 조사구내 이동」중 가구이동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기타 란은 별도로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㉞ 동일조사구내 이동

(가) 분 가

-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동일 조사구내에서 한 가구를 형성하여 분가했을 때에는 「㉞구분」란에 분가라고 기입하고 ㉛㉜란은 이동하기 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하고 ㉝㉞란은 이동후의 가구번호, 가

구원번호를 기입한다.

- 「㉟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㉞이동후 거처의 종류」 「㉝이동후 주택소유관계」란은 이동한 후의 상태를 기입하고, 「㉜이동후 배우관계」 「㉛초혼년월」란은 이동후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기입토록 한다. (물론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상태를 기입한다.)
-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가 분가하여 한 가구를 형성하여 한 가구가 증가했을 때에는 그 분가한 가구를 「㉞ 가구증가」의 하단의 「조사구내의 분가가구」란에 기입하고 ⑤란 총 증가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 분가가구는 새로운 가구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 합

-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하였을 때에는 「㉞ 조사구내 이동」란에서 「㉟구분」란에 통합이라 기입하고 「㉝이동전 가구번호」, 「㉜이동전 가구원번호」, 「㉝이동후 가구번호」, 「㉞이동후 가구원번호」, 「㉟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㉞이동후의 거처의 종류」, 「㉝이동후의 소유관계」, 「㉜이동후 배우관계」, 「㉛초혼년월」을 분가의 경우와 같이 기입한다.
-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되어 한 가구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통합된 가구수를 「㉞ 가구감소」 하단의 「조사구내의 통합가구」란에 기입하고 「㉜」란 총가구 감소수에 합산하여 준다.
- 통합가구에 대하여서는 가구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다) 이 동

- 동일 조사구의 조사구역 내에서 이동가구가 있을 때에도 「㉞ 조사구내 이동」란에 기입한다. 「㉟구분」란에는 “가구이동”이라 기입하고 「㉝이동전 가구번호」, 「㉞이동후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㉜이동전 가구원번호」, 「㉝이동후 가구원번호」, 「㉞이동후 거처의 종류」, 「㉝이동후 소유관계」, 「㉜이동후 배우관계」, 「㉛초혼년월」은 사선「\」을 친다.
- 그리고 이동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보고서 「㉝ 가구표 수정요

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 동일 조사구내 가구이동은 가구증감에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 기입하는 곳이 없으며 가구표도 작성하지 않으나 가구표상의 가구번호를 두줄로 긋고 이동후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원이 다른 가구의 가구원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㉔구분」란에는 “가구원 이동”이라 기입하고 「㉓이동전 가구번호」, 「㉔이동전 가구원번호」, 「㉕이동후 가구번호」, 「㉖이동후 가구원번호」, 「㉗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㉘이동후 거처의 종류」, 「㉙이동후 주택소유관계」, 「㉚이동후 배우관계」, 「㉛초혼년월」은 분가의 경우와 같이 기입한다.

「예」 ㉔ 조사구내 이동 (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

㉔ 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통 가합	㉓ 이동전 가 구 번호	㉔ 이동전 가구원 번호	㉕ 이동후 가 구 번호	㉖ 이동후 가구원 번호	㉗ 이동후 가구주 와의 관계	㉘ 이동후 거처의 종류	㉙ 이동후 주택 소유 관계	㉚ 이동후 배우 관계	㉛ 이동후 초혼 년월
가구이동	01-02-01-01	/	01-06-02-01	/	/	/	/	/	/
분가	11-04-01-01	03	11-02-02-02	01	가구주	독립 주택	전세	유배우	79.4
분가	11-04-01-01	07	11-02-02-02	02	처	독립 주택	전세	유배우	79.4
통합	01-09-01-02	01	01-02-01-01	05	장남	독립 주택	자가	유배우	80.3
통합	01-01-01-02	02	01-02-01-01	06	장남의 처	독립 주택	자가	유배우	80.3
가구원이동	11-10-03-02	08	11-05-01-01	06	장남	독립 주택	자가	미혼	/
분가	11-20-01-01	04	11-12-04-02	01	가구주	독립 주택	전세	유배우	78.4

㉔ 임신기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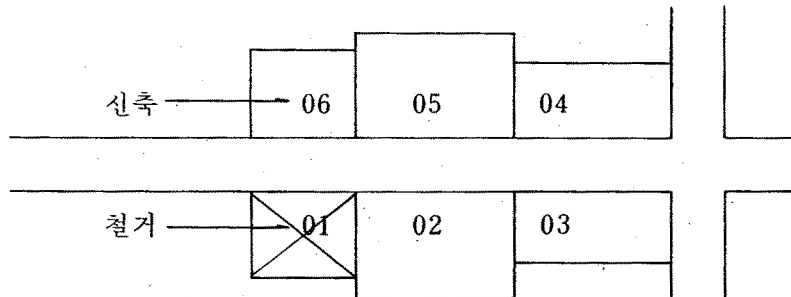
- 기혼부인중 가임여성 (15~49세)에 대하여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중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㉔가구번호, ㉕가구원번호, ㉖부인이름, ㉗출산예정년월을 기입하고 ㉘결과란은 사신을 친다.
- 임신이 끝났을 때는 (정상출산, 중절, 사산, 기타) ㉔가구번호, ㉕가구원

번호, ㉞부인이름, ㉞결과란을 기입하고, ㉞출산예정년월은 사선을 친다.

- ㉞비고란에는 중절이나 사산된(몇 개월만에 중절, 사산되었나?)개월수 및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상상임신, 특수한 병으로 인한 것을 임신으로 오판등)를 기입토록 한다. 특히 사산에 대해서는 출생즉시 사망했는가의 여부를 응답자에게 재확인하여 영아사망과 사산을 정확히 구분토록 하여야 한다.
- 전입과 출생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인 것은 임신기록란에 기입하지 않는다.

㉞ 특기사항 및 신축(누락)거처의 위치

- 신축(누락) 건물(거처)의 위치를 조사구역도의 보완내용대로 그려놓고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 지형지물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조사구역도의 보완내용을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으로 그려넣는다. 단, 중요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요도를 새로 그려 첨부한다.



- 그 외 ㉞~㉞항까지 기입할 수 없었던 사항은 무엇이나 이 란을 이용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예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02-03번 거처는 6월중으로 철거 예정임.

2. 기본자료의 수정 및 보완

가. 조사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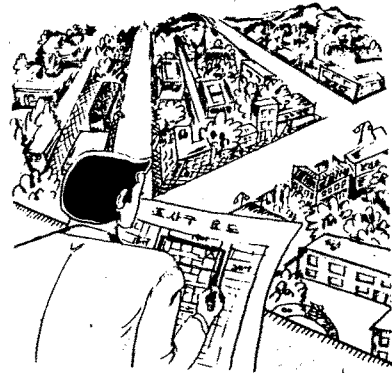
조사구는 조사가원이 지역내의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 인구동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조사구역도는 이 조

사구의 경계선 및 각종 지형지물(즉 산, 능선, 하천, 교량, 논, 밭, 도로, 제방, 전주, 각종 건축물 등)의 분포상태가 표시된 청사진을 말한다. 이 조사구요도는 측량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배부받은 조사구요도를 다음과 같은 순서와 요령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 경계선의 확인

- 조사구요도에서는 그 경계선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조사구요도와 가구표를 가지고 경계선을 따라 실지로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누가 보아도 쉽게 경계선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계선상의 중요 지형지물을 요도의 경계선상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 만일 실지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지도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각종 지형지물의 확인

- 경계선 확인이 끝나면 경계선내의 각종 지형지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 사실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누락된 것이 없는가 또는 착오된 것이 없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기입 및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거처에는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데 누락된 거처를 추가 기입할 때에는 해당 구역의 마지막 거처번호가 되도록 거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거처라 함은 「각종 건물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거주목적으로 건축된 일반 독립주택
 - 여러 가구가 각각 별도로 살 수 있도록 건물이 완전히 구획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 거주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그안에 사람이 살든

안살든)

- 건물로는 볼 수 없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등

3) 수정, 보완요령

조사구 순회 및 가구 방문시마다 거처의 신축 및 철거, 도로의 확장 등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구요도를 수정, 보완한다.

○ 신축(누락)거처의 경우

담당조사구 경제선내의 지역에서 신축거처 (30가구분 이상의 아파트 제외) 및 누락거처가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 발견된 순서에 따라 조사구번호가 홀수일 때는 1번구역부터, 조사구번호가 짝수일 때는 맨 마지막 구역부터 구역번호 차례로 편입시켜 해당구역의 마지막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조사구요도 상에는 해당 위치에 그 거처를 그려넣고 인구동태 조사구역에 해당되는 거처의 가구만을 대상가구로 하여 조사를 한다.

[예] 1. 조사구번호가 0103 (홀수)이고 구역수가 8개인 조사구의 인구동태조사 해당구역이 03번과 04번 구역일 때 7개의 신축거처가 발견되었다면

(발견순서) (편입구역번호)

1번째 거처	01 구역	}	조사구요도에만 보완
2 " "	02 " "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3 " "	03 " "	}	조사구요도상에 보완
4 " "	04 " "		(조사대상 거처)
5 " "	05 " "	}	조사구요도에만 보완
6 " "	06 " "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7 " "	07 " "		

이때 전월의 03번구역의 거처수가 5개였고 04번구역의 거처수가 4개였다면 3번째 발견된 거처는 요도상에서는 0306번 거처가 되고 4번째 발견된 거처는 0405번 거처가 된다.

2. 조사구번호가 0104 (짝수)이고 구역수가 8개인 조사구의 인구동태조사 해당구역이 05번과 06번구역일 때 7개의 신축거처가 발견되었다면

(발견순서) (편입구역번호)

1 번째	거처	08 구역	}	조사구요도상에만 보완
2 "	"	07 "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3 "	"	06 "	}	조사구요도상에 보완
4 "	"	05 "		(조사대상거처)
5 "	"	04 "	}	조사구요도에만 보완
6 "	"	03 "		(조사대상 거처가 아님)
7 "	"	02 "		

이때 전월의 06번구역의 거처수가 5개였고 05번구역의 거처수가 4개였다면 세번째 발견된 거처는 요도상에서는 0606번 거처, 네번째 발견된 거처는 0505번 거처가 된다.

- 철거 (착오) 거처의 경우
요도상의 해당 거처번호 위에 「×」표를 한다.
- 기타 지형지물의 변동시
조사구요도상에 변동된 내용대로 수정 보완한다.
- 주의사항
 - 조사구요도의 경계선과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내용을 보완할 때에는 반드시 적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 및 앞으로 신축이나 누락의 경우에 새로 부여하는 거처번호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조사원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철거 거처자리에 신축된 거처의 거처번호 부여요령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구표

- 매월 변동보고서 및 인구동태 표본조사결과에 따라 가구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보완한다.
- 가구명부도 가구표에 준해서 함께 수정 보완해야 한다.

기존거처내의 가구변동시

조사구요도에 이미 번호가 기입된 기존거처내에 가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전입가구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후에 전입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삽입하여 철하고 2부는 보고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전출가구가 있을 때

- 가구표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으로 붉은 색을 사용하여 「\」을 긋는다.
- ㉓란 비고란에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각 가구원별로 목적지가 다른 경우 ㉔란에 같은 양식으로 기입한다.
- 가구표는 가구번호순으로 남겨두고 전입가구는 그 다음장에 철한다.

(3) 누락가구가 있을 때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부터 있던 가구가 전입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변동보고서 「1 가구증가」의 7란부터 13란까지 기입하고 13구분란에는 전입누락가구임을 기입한다.
- 모든 업무처리는 전입가구에 준하고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삽입하여 철하고 2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부터 없던 가구가 전출누락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동보고서 「2 가구감소」의 16란부터 22란까지 기입하고 22구분란에는 전출누락가구임을 기입한다.
- 모든 업무처리는 전출가구에 준한다.

(4) 착오가구가 있을 때

- 착오로 인하여 없는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했을 때는 전출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㉓비고란에 착오가구 및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 변동보고서 「2 가구감소」의 16란부터 19란까지만 기입하고 22구분란에는 착오가구임을 기입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전출가구에 준한다.

-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있던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철하고 2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 변동보고서 「Ⅱ 가구증가」의 ⑦란부터 ⑩란까지만 기입하고 ⑬구분란에는 착오가구임을 기입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전입가구에 준한다.
- (5) 동일 조사지역내에서 이동한 가구가 있을 때
- 기존가구번호에 두줄을 긋고 새가구번호를 기입한 다음 ㉓비고란에 「동일 조사구내 이동 : 〇〇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〇-〇〇-〇〇로」라 기입하고 순서를 바꾸어 다시 철한다. 이때 물론 바뀐 주소 「⑥거처구분」 및 「⑦소유관계」등은 정정 기입하여야 한다.
- (6) 어떤 가구에서 분가된 가구가 있을 때
-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여 분가를 했을 때에는 분가되어 나간 가구원은 ㉑란에 「〇〇〇〇-〇〇-〇〇번 가구로」라고 기입한다.
 - 분가되어 나간 가구는 전입후의 거처에서는 전입가구와 같은 순서로 처리하고 ㉓비고란에 「〇〇〇〇-〇〇-〇〇 가구에서 분가」라 기입한다.
- (7) 조사구내의 2개 가구가 통합되어 1개가구로 되었을 때
- 통합을 위하여 전출된 가구의 거처에서는 전출가구처럼 처리하고 ㉓란에 「〇〇〇〇-〇〇-〇〇번 가구로 통합전출」이라 기입한다.
 - 가구가 통합된 거처의 가구에서는 전입가구원처럼 처리하고 ㉑비고란에 「〇〇〇〇-〇〇-〇〇번 가구에서 통합전입」이라 한다.
- (8) 표본연동교체로 인한 동일조사지역내 이동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금월에 조사했던 구역(다음달에는 조사하지 않는 구역)에서 다음달에 조사하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전입가구와」와 같이 처리한다.
 - 금월에 조사했던 구역(다음달에도 계속 조사하는 구역)에서 다음달에 조사하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전출가구와」 같이 처리한다.
 - 금월에 조사했던 구역(다음달에도 계속 조사하는 구역)에서 다음달에 새로 시작하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동일 조사구역내 이동」으

- 전출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전출누락보완」이라 기입한다.

(4) 착오가구원이 있을 때

- 착오로 인하여 그 가구의 가구원이 될 수 없는데도 가구표에 기입되었을 때에는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그 가구에 있던 사람을 가구원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5) 출생아가 있을 때

「3 가구원 증가」란의 ㉔란부터 ㉓란까지만을 기입하고 ㉞란 구분란에 “출생”이라 기입한다.

(6) 사망자가 있을 때

「4 가구원 감소」의 ㉙란부터 ㉚란까지만을 기입하고 ㉙란에 “사망”이라 기입하고 가구원번호에 사선을 긋는다.

(7) 출생후 사망아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이나 이후에 출생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출생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8) 누락후 사망자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에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누락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9) 전입후 사망자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후에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변동사항 확

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전입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10)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자가 있을 때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출생과 전입 두가지로 처리한다.

(11)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전입한 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 이때에는 비록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으나, 전입가구원과 같은 요령으로 가구표의 ⑩란부터 ⑳란까지 기입한다.(전입가구표 제출시 변동보고서 「㉓ 가구원 증가」란에 중복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가구명부

가구의 변동내용에 따라 가구표의 수정 및 보완, 변동보고서의 기입과 동시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가구감소의 경우

-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 통합가구는 가구의 감소요인이 되며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 ②증감여부: 사선「\」을 긋는다.
 - ⑤변동일자: 전출, 전출누락, 착오, 통합 년월일을 기입한다.
 - ⑥변동구분: 전출, 전출누락, 착오, 통합등으로 기입한다.
 - ⑦보고년월: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 ⑨비 고: 동일조사구내로 전출한 경우 「○○○○-○○-○○번 가구로 이동」이라 기입한다.

가구증가의 경우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 분가는 가구의 증가요인이 되며 마지막 가구 다음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 ①가구번호: 새로 작성한 가구표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④가구주 이름: 가구주의 이름을 기입한다.
 - ⑤변동일자: 전입, 전입누락, 착오, 분가하여 전입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 ⑥변동구분: 전입, 전입누락, 착오, 분가 등을 기입한다.
 - ⑦보고년월: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 ⑨비 고: 동일조사구내에서 전입했을 경우 「○○-○○-○○○○번 가구에서 이동」이라 기입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의 증감의 경우

-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가 철거(착오)되었을 때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 ⑤변동일자: 철거(착오)년월일을 기입한다.
 - ⑥변동구분: 각 경우에 따라 철거 혹은 착오라 기입한다.
-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가 신축(누락)되었을 때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 ③가구번호: 거처번호만 기입한다.
 - ⑤변동일자: 신축(누락)년월일을 기입한다.
 - ⑥변동구분: 신축 혹은 누락이라 기입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가 신축·철거되었을 때

거처의 신축, 철거의 사실을 변동일자와 변동구분에 기입하고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구내 이동 혹은 각 경우에 따라 가구의 증가 혹은 감소의 기입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라. 변동사항 종합표

매월 15일까지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가구표철 맨 위에 같이 철해 둔다.

Ⅲ.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Ⅲ.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1. 조사표의 종류

인구동태조사표에는 1) 출생조사표, 2) 사망조사표, 3) 혼인조사표, 4) 이혼조사표가 있다.

2. 작성시기

매월 조사때 조사지역내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작성한다.

3. 일반적인 주의사항

- 가구표와 조사표 및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를 휴대하고 조사에 임한다.
-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수 및 가구원성명을 물어 가구표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인구동태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 조사표 기입요령을 충분히 익혀 조사에 임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응답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 조사표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의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질문시에는 조사표상의 항목순서대로 질문함으로써 질문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규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사기일전이나 기일이 지난 후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 조사대상기간(전월 16일~금월 15일)중에 표본구역내에 거주하던 가구가 금월 15일 이후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근가구에 물어 동태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조사결과 알게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한다.
- 조사표는 가구별로 작성하며 한 조사표에 해당 가구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동태사항을 기록한다. 이상의 동태건이 하나도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1985년 2월부터 조사대상기간이 전월 16일부터 금월 15일까지 1개월간 이므로 전월에 발생된 동태건수를 누락시키기 쉬우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표본연동교체에 의하여 그달에 새로 시작하는 구역은 과거의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세밀히 관찰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중에 대한 것만 묻지 말고 과거 1년간에 대해 조사하여 수시로 누락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출생, 사망의 누락 혹은 보고내용이 조사원 자신에 의해 보완, 수정되었을 때에는 조사업무상 책임문제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누락, 조사상의 오류 등이 중앙직원에게 의한 확인조사에 의해 밝혀질 때에는 조사원은 업무상 태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4. 면접 및 조사표 작성요령

가. 출생조사표

1) 출생의 정의

출생이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노출된 현상으로서, 모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태출의 절단 또는 태반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호흡, 심장의 고동, 태출의 진동, 수의근의 명료한 움직임 등 생존하고 있는 증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2) 조사기준

- 전입한 가구의 경우 출생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출생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 전출가구의 경우에도 당해 출생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하였
면 조사한다.
< 가구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달 16 일
부터 이달 15일까지 있었던 출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출생후 입양된 아이는 생모의 상주가구에서 조사한다.
즉 생모가 같은 표본지역내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은 아기가 조사당시 당해조사구내에 살고 있는 경우는 그 유아의 출생지
및 어머니(생모)의 상주지에 관계없이 동조사구내에서 조사한다.
- 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현상
주지에서 조사하고 유아 및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죽
기전 상주지에서 조사한다. 이 경우에는 출생과 사망이 함께 조사되어야 한
- 조사당시 여행중에 있는 아기도 조사한다.

3) 조사요령

- 가구를 방문했을 때 기저귀 및 금줄(도시변두리지역 및 농촌지역) 등 어
린애가 있는 흔적이 있는가 관찰하여 있을 경우 조사토록 한다.
- 가구표에서 「출산예정년월」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예정일이 경과했거나 당
월에 해당될 경우 출산유무를 확인한다.
- 조사시점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상당기간(1년이상)애기가 없는 경우 반
드시 확인해 본다.
- 가구표의 가구원상황을 보고 애기가 있는 경우라도(1명 혹은 딸만 들이
나 셋일 때)최종아이를 낳은지 1년이상 경과하였으면 임신 및 출산여부를
확인한다.
- 출산예정일이 임박한 부인(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이므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달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가구표철 맨위에 철해 있는 「변동
사항종합표」에 기록하여 확인토록 한다.
- 산모가 부재중일 경우(친정 혹은 병원)에도 다른 가구원에게 물어 출산

한 사실이 확실하면 조사토록 한다.

- 낳은지 며칠후에 사망한 애기는, 그 가구에 애기가 있는 흔적이 전혀없고 또 응답자가 사실을 감춰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출산예정년월을 반드시 기록하고 또 최종아이 이후 경과년수, 조사시점과 초혼년월과의 간격 등을 참고하여 응답자를 유도 조사토록 한다.
- 계속되는 여아출생이나 영아사망 등은 응답자가 사실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 확인토록 한다.
- 한가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인근가구에 가서 반드시 재확인(특히 출생, 사망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일단 출생전이 발견되면 다음 각항을 조사 기입한다.

① 본적 및 호주

출생아(출생아 부친)의 본적 및 호주성명을 기입한다.

② 모의 이름

출생아의 친어머니 이름을 기입한다.

③ 모의 가구원번호

출생아 어머니의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④ 출생아 이름

출생아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만 기입하여 보고하되 가구표상에는 정식이름이 생겼을 때에 이름을 기입한다.(예 : 김 ○○)

⑤ 출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태어난 아기의 실제 출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

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⑥ 성 별

출생아의 남녀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에 ○표 한다.

⑦ 출산당시 모의 연령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 기입한다. 물어
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환산
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예시 1) 출생아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늦은 경우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출산당시 모의 나이

1981.9.20 - 1952.5.4 = 29세

(예시 2) 출생아의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빠른 경우. 출생아
의 출생년도에서 모의 출생년도를 뺀 나이에서 다시 1세를 빼야
모의 만나이가 된다.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1 = 출산당시 모의 나이

1981.2.27 - 1948.9.11 - 1 = 32세

(예시 3) 출생아와 모의 출생월이 같고 출생일자가 다른 경우

- 첫째,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예시 1)과 같이 환산하고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모의 나이

1981.7.21 - 1952.7.15 = 29세

- 둘째,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환산한다.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1 = 모의 나이

1981.3.3 - 1952.3.18 - 1 = 28세

㉔ 출산순위

신생아가 모의 몇번째 출산아 인가를 기입한다. 직접 모에게 「이 아이는 몇번째 아이가 되십니까?」라고 물어 기입해야 한다. 이때, 출산 순위는 낳았다 잃은 아이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㉕ 임신기간

신생아의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월수를 기입해야 한다. 임신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이 아이를 몇개월만에 낳으셨습니까?」등으로 묻고 만일 산모가 확실한 임신기간을 모를 경우는 「마지막 월경년월일」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달수를 계산한다.

$$\text{출산년월일} - \text{모의 마지막 월경년월일} = \text{○개월 ○일}$$

㉖ 모의 교육정도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의 최종 출신학교의 정도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기입한다. 재학중인 사람이나 중퇴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년까지 기입한다.(예 : 「무학」, 「국교졸」, 「중졸」, 「중2중퇴」, 「고졸」, 「대3재」, 「대4중퇴」등).

㉗ 조산자

- 신생아 분만에 임회하여 분만을 도운 사람을 말하며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한다. 의사 혹은 조산원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 기타에 해당한다.
- 자택에서 분만한 경우라도 의사가 조산했으면 「1. 병원」에 해당한다.

나. 사망조사표

1) 사망의 정의

사망이란 출생후 어느 시기에 있어서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영원히 소멸됨을 말한다. 즉 소생능력이 없는 출생후의 생존기능의 정지를 말하며 사산은 제외한다.

2) 조사기준

- 전입가구의 경우 전입이전 거주지에서 사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조사되어야 한다.
- 전출가구의 경우에도 당해 사망과 가구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조사한다.

3) 조사요령

- 사망은 자칫하면 누락하기 쉽고 응답기피도 많이 나타나므로 응답자를 적절히 유도하여 조사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가구표 기재상황을 보고 연로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하세요?」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 전입가구에 대해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이 있었는가를 알기위해 할머니만 가구원으로 계실 경우 「할아버지는 안계세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등으로 질문하고 핵가족인 경우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으세요?」로 질문하여 확인토록 한다.
- 사망발생이 별로 없는 연소 및 젊은 연령층에 대한 사망을 알기 위해서는 가구원 개개인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 가구원이 타지역(친척방문중, 여행중, 병원)에 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존 가구원중에서 계속해서 2개월이상 보이지 않을 경우 어디에 갔는가 반드시 확인한다.
- 가계부 기입에서 담배(술, 치료용 의약품)지출이 계속 있다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것을 필요로 했던 가구원이 전출했는가 혹은 사망했는가를 자세히 관찰하여 확인토록 한다.
- 불의의 사고(화재, 폭발, 연탄가스중독 등)로 인하여 가구원 전체가 사망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구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 현재도 계속 살고 있는지 반드시 옆가구에 확인하고 통·반장을 통하여 표본지역 전체에 대한 정보획득을 하도록 한다.
- 영아사망, 악성병, 전염병 및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교통사고, 익사)

인한 사망 등은 응답자가 기억하기도 싫어하여 대부분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시지역: 통·반장, 농촌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을 통하여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하도록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③ 사망자 이름

사망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기”로 기입한다.

④ 가구원번호

사망자의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성 별

사망자의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에 ○표한다.

⑥ 생년월일

사망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할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해야 한다.

⑦ 사망년월일

- 호적에 신고한 일자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사망한 일자를 양력으로 기입한다.
-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⑧ 사망자의 교육정도

사망자의 최종 출신학교의 정도에 따라 다음 예와같이 기입하며 재학중인 사람이나 중퇴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학년까지 기입한다.

(예: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중2중퇴」, 「고1재」
「구제중5년졸」 등)

㉑ 직업

사망자가 사망직전까지 종사하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사망자의 직업변동이 심할 때는 평생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입하며 15세 미만인 자는 대상의,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으로 기입하되 부호는 ○○으로 기입한다.

(부록, 인구동태 직업부호 참조바람)

㉒ 혼인상태

사망당시 혼인상태를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기입한다.

㉓ 사망진단자

사망확인, 사망진단서의 작성, 검안서작성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하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 기타」에 ○으로 표시한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의사가 사망확인을 했으면 1. 의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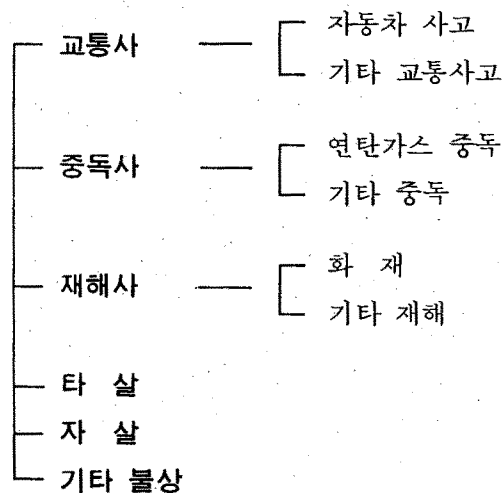
㉔ 사망원인

인구동태 사망원인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모르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기입한다.

[사망의 분류]

○ 병사

○ 외인사(外因死)



○ 기타 및 불상

1. 병 사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외인없이 노쇠로 인한 사망은 병사임)

2. 외인사

병사가 아닌 외적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통사고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 자동차 사고

충돌이나 비충돌에 관계없이 자동차(버스, 택시, 고속버스, 트럭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예) 자동차와의 충돌, 기타 물체와의 충돌, 고속도로에서의 추락, 승강시의 비충돌성사고, 조종력상실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졸음, 섶맹 등) 등

○ 기타 교통사고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예) 철도차량충돌, 탈선, 열차에서 추락, 선박침몰에 의한 사고, 높이가 다른 선박으로 이동할 때 부주의로 인한 추락, 이착륙시 동력 항공기사고, 우주선사고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 자동차 스포츠 사고→재해사
- 산업시설 구역내에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장비의 차량에 관련된 사고→재해사
-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사고→재해사
- 운행정지중인 운송장비 또는 차량의 유지 또는 수선중의 사고→ 기타 및 불상(不詳)

2) 중독사

각종 약물, 가스, 음식물중독에 의한 사망을 말하며 두가지로 분류한다.

○ 연탄가스 중독

○ 기타 중독

부적합한 약물 또는 과오 및 부주의에 의한 약물투입 약품사용에서의 불의의 사고, 유독 동식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유독가스(유황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등

단, 다음의 경우는 중독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투입된 올바른 약물이 부작용의 원인이 될 때
- 자살이나 타살을 의도로 또는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약물, 가스, 음식을 투여했을 때

3) 재해사

각종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한다.

○ 화 재

폭발,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기타 재해

폭설, 폭풍우 및 지각동요로 인한 사고, 계단 및 승강기에서의 추락, 불의의 익사, 불의의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건축현장에서 추락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유독성 동식물 및 곤충에 의한 중독 또는 독성작용에 의한 사고

4) 타 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타인에 의하여 상해 또는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진 상해(예: 손, 발, 주먹 등의 폭력, 총기 및 폭발물에 의한 가해, 약물, 약제중독에 의한 가해, 상해 또는 살해목적의 소아의 유기, 살해목적의 화상,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받은 상해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후유증으로 사망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타살로 분류하지 않는다.

- 법적 개인에 의한 상해 - 경찰 또는 근무집행중인 자를 포함한 기타 법률집행자가 법률위반자를 체포 또는 체포하려는 시도중 소란진압, 질서유지 및 기타 법률집행중에 입힌 상해→외인사중 기타 및 불상(不詳)
-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 전쟁 및 폭동기간중 발생한 군인 및 시민의 상해, 정전후 발생한 전쟁행위에 기인한 상해

5) 자살 및 자상

자살 및 자상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의에 의한 사망

예)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자살 및 자의중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방법에 의한 자살 및 자상, 자살 또는 자상의 시도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후에 후유증으로 사망되는 경우

6) 외인사중 기타 및 불상(不詳)

상기 5종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외적인 요인으로 사망된 것이 사실이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을 것.

3. 기타 및 불상

병사 및 외인사도 아니며 사망원인이 전혀 불명인 경우

다. 혼인조사표

1) 혼인의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을 같이 살기로 하여 서로 공동의 생활로 들어가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민법상의 혼인신고 또는 결혼예식을 올린 것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한다.

2) 조사기준

- 상주개념에 의거 조사당시 그 조사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혼인은 모두 조사한다.
- 전입한 가구(원)의 경우 혼인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혼인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 전출한 가구(원)의 경우에도 당해 혼인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했으면 조사한다.
<가구(원)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있었던 혼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본 조사에서 혼인이라 함은 혼인식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혼(동거)도 포함하므로 사실혼에 대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혼인조사표는 부부(한쌍)를 기준하여 1건으로 보아 1매를 작성한다.
- 혼인하여 최초로 가정을 이루어 전입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혼인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 혼인만 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국내 타지역)남자를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에는 처의 가구원번호는 없을 것이므로 「특기사항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3) 조사요령

- 가구가 새로 전입해 왔을 경우 이름 및 연령을 참고하여(본인들은 남매라고 얘기함)부부인가 확인해 보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인근가구에 가서 재확인토록 한다.
- 혼인은 그 성질상 대부분이 전입가구(혼인과 동시전입)에 의한 것이므로 어린아이가 없는 부부만의 가구전입일 경우 혼인대상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 결혼식만 올리고 따로 살고있는 경우(해외취업, 군입대)에도 혼인조사표를 작성하므로 젊은 여자(남자)가 혼자 살고 있을 때 결혼유무를 세심히 관찰한다.
- 부부의 나이 차이가 심할 경우 재혼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재혼일 경우 도(한쪽 혹은 양쪽 모두)혼인조사표를 작성하므로 본인들이 부인하면 인근가구에 가서 확인토록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부처 양쪽다 가구원번호를 기입토록 한다. 단, 혼인한 후에 부처중 어느 한 쪽이 조사구내에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번호를 한쪽만 기입한다.

부(夫)에 관한 사항

③ 이 름

부(夫)의 이름을 기입한다.

④ 가구원 번호

부(夫)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연 령

- 부(夫)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환산하여 기입한다.
- 환산방법은 ①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 연령」과 같다.

⑥ 교육정도

부(夫)의 교육정도를 기입한다.

처(妻)에 관한 사항

⑦ 이 름

처(妻)의 이름을 기입한다.

⑧ 가구원번호

처(妻)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⑨ 연 령

- 처(妻)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환산방법은 ①출생에서 「출생당시의 모의 연령」과 같다.

⑩ 교육정도

처(妻)의 교육정도를 기입한다.

⑪ 혼인년월일

- 실제 그 부부가 결혼한 날짜를 기입한다.
- 사실혼인 경우 동거시작년월을 기입한다.

라. 이혼조사표

1) 이혼의 정의

부부 쌍방의 합의 또는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를 말하며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함께 살

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현재 별거상태에 있을 경우도 이혼으로 간주한다.

2) 조사기준

- 전입한 가구(원)의 경우 이혼이 전입된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이혼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 이혼이 발생했으나 부부가 모두 전출하였을 경우, 당해 이혼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했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중 어느 1명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조사한다.
주의 : 가구(원)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있었던 이혼을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3) 조사요령

- 이혼은 불유쾌한 사실이므로 응답자가 응답을 기피하고 또 사실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이나 통·반장을 통해 확인토록 한다.
- 혼인연령이 지난 단독가구원 또는 전입가구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조사표 작성요령

③⑤ 부(夫) 및 처(妻)의 이름

부(夫) 및 처(妻)의 이름을 기입한다.

④⑥ 부(夫) 및 처(妻)의 연령

부(夫) 및 처(妻)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환산하여 기입하도록 하고 환산방법은 [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 연령」과 같다.

⑦ 생존자녀수

생존자녀수는 그 부부가 이혼할 당시 동거했던 자녀를 말한다. 즉 재혼한 경우 전남편(전처)소생을 두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은 생존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㉔ 혼인년월

혼인년월은 가구표상의 초혼년월이 아니고 실제 이 부부가 결혼한 날짜를 말한다.(이 란은 해당부부의 실제 결혼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

Ⅳ.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Ⅳ.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1. 조사표류의 검토

가. 가구표

- 각 항목마다 기입상 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 생년월일이 양력으로 환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생년월일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만 15세 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 모의 연령과 첫째 자녀와의 생년월일을 대조하여 연령차이가 만 15세 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 생년월일과 학력을 비교하여 맞게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중 2년제, 국 3년퇴 등과 같이 몇년재학 및 중퇴 등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자녀들간의 터울은 적어도 1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배우관계가 “미혼”이 아닐 경우 반드시 초혼년월이 기재되어야 한다.
- 부처간의 나이차이가 심할 때는 재혼여부를 확인하고 재혼일 경우 부처의 초혼년월은 각기 달라야 한다.
- 조사시점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보고 어린 아이가 없는 경우 임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2인 이하) 마지막 자녀 이후 1년이상 경과했을 때는 임신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나. 변동보고서

- 「③현황」에서 전월란의 숫자가 전월변동보고서상의 금월가구수 및 인구수와 일치하는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③현황」란의 기입이 맞게 되어 있는가 재확인한다.
(전월+증가-감소=금월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틀린 경우가 있음)

- 1234567란의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 「1가구증가」 「2가구감소」 「3가구원증가」 「4가구원감소」란에서 실제 기입된 내용과 맨 윗상단에 집계된 숫자가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1가구증가」 및 「2가구감소」의 경우 가구표상의 가구번호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번호가 일치하는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표상의 가구원수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원수도 일치 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7임신기록 및 결과」란은 모든 임신부인과 임신이 끝난 부인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는바 꼭 확인하여야 한다.
(출생조사표가 제출되면 이 란은 꼭 기록되어야 함)

다. 조사표

- 1234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1출생」에서 ④모의 가구원번호가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가끔 출생아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하는 사례가 있음)
- 「2사망」에서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바르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 「3혼인」에서 부처 양쪽 다 반드시 가구원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단, 예외의 경우에는(부처가 같은 조사구에 살지 않을 때) 어느 한쪽만 기입해도 된다.
- 「4이혼」에서 ⑧혼인년월은 두사람이 결혼한 날짜를 말함. 특히 재혼한 부부의 경우 가구표상의 초혼년월과는 구별되어야 함.
(동일하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해야 한다.)
- 생존자녀수는 두사람이 이혼할 당시 같이 살았던 자녀수를 기입해야 하므로 가구표와 대조하여 가구표상의 자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표류 제출

가. 제출상의 유의점

- 인구동태표본조사표는 표지가 없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천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출할 조사표류중에 빠진 것이 없는가를 재확인한다.
-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표를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할 조사표류

- 인구동태표본조사표 1부
- 변동보고서 (3부 작성하여 중앙에 1부)
- 가 구 표 (")

다. 제출일자

- 조사원은 각 사무소에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 사무소장은 익월 5일까지 중앙에 도착하도록 제출한다.

부 록

인구동태직업부호

01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 자연과학자 및 자연기술공 건축, 기사, 의사, 약사, 화가, 언론, 학자, 법무, 항해사, 기관사, 조종사 제도사, 간호원, 성직자, 교직자, 조각, 체육인
0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관리자, 정부관리직, 입법종사자
03	사무직 및 사무관련직 종사자 제장, 경리, 속기, 교환, 우편집배원, 조사원, 승무원, 여객전무, 역장
04	판매종사자 판매관리자, 판매원, 점원, 행상, 복덕방, 전당포, 고물수집, 냉마주이, 증 권거래, 보험의무원, 가두판매
05	서비스직 종사자 음식업, 숙박업, 영양사, 조리사, 가정부, 청소부, 미용사, 이용사, 세탁공, 소방원, 경찰관, 안내
06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수렵업 종사자 농업경영자, 과수원, 낙농, 벌목부, 어부, 농장종사자
07	생산 및 생산관련직 종사자 운수, 장비, 운전사, 노무자, 광부, 채석부, 굴정부, 방적공, 제재공, 금속 가공, 화학제품제조공, 가죽처리공, 식품 및 음료제조공, 담배제조공, 양복 공, 재봉사, 실내장식, 가구제조공, 대장공, 기계설치 및 조립공, 전기설비 공, 용접공, 판금공, 유리 및 도자기공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공, 인쇄공, 도장공, 건설공사자, 노동자
00	14세 미만인 경우(사망신고에 한함) 무직, 가사, 학생 군 인 미 상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가 구 표		① 조사구 번호	② 구역 번호	③ 거처 번호	④ 가구 번호	⑤ 주소	⑥ 거처 구분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4. 비거주용건물 내의 주택 5. 주택이외의 지처		⑦ 소유 관계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싹월세 5. 월세 6. 기타		⑧ 구역 구분	1. 도시가계 +경·인 2. 경·인		매 중 매					
198	작성																				
⑩ 번호	⑪ 이 류	⑫ 가구주 관계	⑬ 성 별	⑭ 생 년 월 일			⑮ 학 력	⑯ 배우관계		⑰ 주 혼		⑱ 희망 자녀	⑲ 임 신 여 부		⑳ 총출생이수	㉑ 전 입			㉒ 비 고	㉓ 가계조사 부적격 사유	
				년	월	일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년	월	남	여	년	월	명	년	월	일			
01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02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03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㉔ 비고(거처 및 가구특징 등)
04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05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06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07				1	년	월	일						19	년	월		19	년	월	일	

※ 통계법 제 9 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	--	--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이름

조사담당자	확인 및 가구표성리
	내검요원 담

인구동태표본조사표
(198년 □ 월분)

① 본적	시도	구시군	리	번호	호주성명:

② 전수	③ 모의 이름	④ 의 모가구원호	⑤ 출생 이름	⑥ 출생 년 월 일	⑦ 성별	⑧ 출생의 연월일	⑨ 출생의 순위	⑩ 임신 기간	⑪ 주의 교역도	⑫ 조 산 자
1				198년 월 일	1남 2여					1. 병원 2. 조산원 3. 기타()
2				198년 월 일	1남 2여					1. 병원 2. 조산원 3. 기타()

① 본적	시도	구시군	리	번호	호주성명:

② 전수	③ 사 망 이	④ 가 구 원 호	⑤ 성 별	⑥ 생 년 월 일	⑦ 사 망 년 월 일	⑧ 사 망 사 의 교 역 도	⑨ 식 업	⑩ 혼 인 상 태	⑪ 진 단 자	⑫ 사 망 원 인
1			1남 2여	198년 월 일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2			1남 2여	198년 월 일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③ 혼 인

② 전수	夫 에 관 한 사 항			妻 에 관 한 사 항			⑪ 혼인년월일			
	③ 이 름	④ 가 구 원 호	⑤ 연 령	⑥ 교 육 정 도	⑦ 이 름	⑧ 가 구 원 호		⑨ 연 령	⑩ 교 육 정 도	
1										198년 월 일
2										198년 월 일

④ 이 혼

② 전수	夫 의 이 름			妻 의 이 름			⑧ 혼인년월일	⑨ 발생년월일
	③ 이 름	④ 가 구 원 호	⑤ 연 령	⑥ 이 름	⑦ 가 구 원 호	⑧ 혼인년월일		
1								198년 월 일
2								198년 월 일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변 동 보 고 서

198 년 월 분

① 조사구 번호

조사구주소 구시군 동읍면 리가

② 가구표 정리

조사담당 지도구책임자 담당

③ 현황	전월	증가	감소	금월
	가구			
	인구			

	합계	계획	신규	증지
출생				
사망				

1 가구 증가 (5) 가구 (6) 명

가 구 번 호	가 구 주 이 름	가 구 원 수	변 동 일 자	건 거 주 지	이 동 사 유	구 분
1			198	시도 구시군	1. 2.	
2			198	시도 구시군	1. 2.	
3			198	시도 구시군	1. 2.	
4			198	시도 구시군	1. 2.	
5			198	시도 구시군	1. 2.	
6			198	시도 구시군	1. 2.	
7			198	시도 구시군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분가한 가구 수 가 구

※ 1. ⑬구분란은 전입, 전입누락, 착오등을 기입
2. ⑤란에는 조사구내 분가한 가구수도 합제됨

2 가구 감소 (14) 가구 (15) 명

가 구 번 호	가 구 주 이 름	가 구 원 수	변 동 일 자	복 적 시	이 동 사 유	구 분
1			198	시도 구시군	1. 2.	
2			198	시도 구시군	1. 2.	
3			198	시도 구시군	1. 2.	
4			198	시도 구시군	1. 2.	
5			198	시도 구시군	1. 2.	
6			198	시도 구시군	1. 2.	
7			198	시도 구시군	1. 2.	

조사구내의 가구로서 통합된 가구 수 가 구

※ 1. ⑭구분란에는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2. ⑬란에는 조사구내 통합된 가구수도 합제됨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3 가구원 증가(명)

구분	이동사유	전입일자	전거주지	총출생아수	임신여부		희망자녀		초혼		구분	학력	연령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이름	가구원번호	가구번호	
					남	여	남	여	년	월			일								
1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2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3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4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5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6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7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8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9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10			구시군	명					19년	월			19년	월	일						

* 39 구분란은 출생, 전입, 누락등으로기입

4 가구원 감소 (명)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이 름	변동일자	복 적 지	이 동 사 유	구 분
2			198	시 도 구 시 군	1. 2.	
3			198	시 도 구 시 군	1. 2.	
4			198	시 도 구 시 군	1. 2.	
5			198	시 도 구 시 군	1. 2.	
6			198	시 도 구 시 군	1. 2.	
7			198	시 도 구 시 군	1. 2.	
8			198	시 도 구 시 군	1. 2.	
9			198	시 도 구 시 군	1. 2.	
10			198	시 도 구 시 군	1. 2.	

5 가구표수정요구사항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가 구 표 관 번 호	수 정 할 내 용	
			수 정 전 내 용	수 정 후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 47 구분란은 전출, 전출누락, 사망, 착오등을 기입

6 조사구내 이동(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											
구분	이동 전 가구번호	이동 전 가구원번호	이동 후 가구번호	이동 후 가구원번호	이동 후 변경된 내용				주요년월		
					가주와의 관계	지치외종류	주택소유관계	비우관계	년	월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1. ㉔ 구분란은 "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을 기입한다. 2. 해당사항이 없으면 사선(/)을 한다.
3. 분가한 가구는 가구표를 작성 첨부할 것.

7 임신 기록 및 결과						
가 구 번 호	가 구 원 번 호	부 인 이 름	출 산 예정 년 월	결 과	비 고	
1	- - -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2	- - -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3	- - -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4	- - -		19 년 월	1. 출생 2. 중절 3. 사산 4. 기타		

8 특기사항 및 신축, 누락처의 위치	

